

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3. 9.

특 허 청
(특 허 제 도 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요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27.~1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다목(4) 중 “**한정자산자 또는 금치산자가**”를 “**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**”로 하고,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10호가목 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가연구개발사업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고안을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항
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(1) 중 “ **【기여율】** , ”을 삭제하고, 같은 목 (2) 중 “**시스템(NTIS)**”를 “**서비스(NTIS)**”로, “ **【과제관리(전문)기관명】** 란은”을 “ **【부처명】** 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 **【과제관리(전문)기관명】** 란은”으로 하며, “ **【기여율】** 란은 이 고안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/1로 적고,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○/□과 같이 분수로 적되,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. ”를 삭제하고, 같은 목 (2)[예] 외의 부분에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목 (2)[예] 중 “ **【기여율】 1/2**”을 각각 삭제한다.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(1)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1호). 따라서 이 고안을

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항). 또한, 이 고안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.

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【과제고유번호】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해당사항 없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153